

청심국제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안건처리결과표

일시 : 2014년 4월 7일 (월)

장소 : 본교 교장실

안 건 명	자문사항	처리결과	담당부서
위원장, 부위원장 지역위원 선출	호선으로 선출 위원장 : 노상구 위원 부위원장 : 김소미 위원 지역위원 : 허창환 위원, 박수현 위원	-	-
졸업앨범 제작	업체명 : 조은프린트 대상학년 : 졸업예정자 고3학년 춘추복 반별촬영 : 4월 25일 촬영 완료 하복조별사진 및 사복개인촬영 : 6월 예정 가격 : 100,000원/권 (인상없음)	원안가결	창의인성 계발부
발전기금 사용	목적 : 뮤지컬 관람을 통한 학생들의 문화체험과 단결력을 고취 및 리더십 함양을 통해 올바른 인격 형성 도모 내용 : 뮤지컬 서편제 대상 : 고등학교 1~3학년 중 희망자 장소 : 유니버셜아트센터	원안가결	고등학교부
건강검진 기관선정	· 검진기관 선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2개 이상의 검진기관을 선정하여 계약한다.(단, 지역여건상 2개 이상 선정할 수 없는 경우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1개의 검진기관만 선정 가능) ※ 본교는 교육감 승인 요청한 상태임 ⇒ 1개 검진기관(일반검진) 선정 및 출장검진(구강검진) 요청 가. 가평관내 검진 대상기관 - 일반검진 · 청심병원 - 소요시간: 학교에서 차량 이동 시 5분 소요됨 ⇒ 따라서 본교는 1개 검진기관(청심병원)을 선정하고자 함. · 검진방법: 개별검진을 원칙으로 하되, 보호자가 원하거나, 지방학생의 경우(보호자가 원할 때) 단체검진 나. 구강검진 · 교통여건 상 구강검진은 출장검진이 필요함 ⇒ 따라서 본교는 ‘정상균치과’ (잠실위치)와 계약하여 출장검진을 실시하고자 함.	원안가결	보건실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	1. 제안이유 - 경기도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가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본교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조례에 대한 개정이 필요함 2. 주요내용 가. 중복된 단어 삭제(제명, 안 제1조) - “경기도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 →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로 함. 나. 운영위원 임기 제한 신설(제4조제1항) - 위원의 임기를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제한함으로써, 장기간 운영위원을 연임함에 따라 각급 학교 운영위원(학부모, 교원, 지역)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사례를 방지하려는 것임. 다. 예·결산소위원회 설치를 의무화 함.(제14조제1항) - 학교운영위원회에 예·결산소위원회를 두어 예·결산에 관한	원안가결	경영기획팀

	실질적인 심의 및 자문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함.		
예·결산 소위원회 규정 개정	1. 제안이유 가. 경기도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가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본교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조례에 대한 개정이 필요함 나.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에 예·결산소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여, 학교 예·결산에 관한 실질적 심의 및 자문을 함으로써 건전한 학교회계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원안가결	경영기획팀
학교회계결산	세입: 8,123,515천원 세출: 7,559,507천원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384,801천원	원안가결	경영기획팀
생활관결산	세입: 1,391,197천원 세출: 1,391,197천원	원안가결	경영기획팀